

#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6,967,887	10,709,037
일반회계	323,665,873	9,709,976
특별회계	33,302,014	999,060
기타특별회계	33,302,014	999,0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763,407	832,902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50,035	1,50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340,000	10,20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940,450	28,214
복지기금특별회계	384,716	11,541
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161,124	4,834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3,662,282	109,86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633,498,000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